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투자신탁(UH) [채권]

□ **변경 사유** : ① 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3. 8. 29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-----	------	-------	-------
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
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요약정보
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8. 7. 기준</u>
	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8. 7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투자자 유의사항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 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 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 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 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 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 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 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 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 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 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 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.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 후) : <u>제 3(4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	17 시 이전(경과 후) : <u>3(4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7 시 이전(경과 후) : <u>제 3(4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제 7(8)영업일</u> 에 지급	17 시 이전(경과 후) : <u>3(4)영업일</u> 기준가격으로 <u>7(8)영업일</u> 에 지급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최근 3 년 경과 내역 삭제	부책임운용역 신홍섭 (2016.08.08~2020.07.08) 부책임운용역 문성호 (2016.08.08~2020.01.08) 부책임운용역 진재식 (2016.08.08~2020.01.08)	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 <u>〈삭 제〉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 자대상 가.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	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
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〈신 설〉	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, <u>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</u>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<u>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기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 제한]	기재 정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 -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	1)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▶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. 단,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. -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 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

		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	<u>지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 4-54 조의 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</u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	자본시장 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표준편차 변경	<u>표준편차 : 6.80%</u>	<u>표준편차 : 8.20%</u>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<u>제 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	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7 시 이전(경과 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<u>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
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제 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 7(8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제 3 영업일</u> (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제 4 영업일</u>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	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17 시 이전(경과 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<u>3(4)영업일</u>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7(8)영업일</u> 에 환매금액 지급 5)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<u>3영업일</u> (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<u>4 영업일</u>)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 -	<u>2023. 8. 7. 기준</u> <u>2023. 7. 31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u>아래 ※ 별첨 참조</u> 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 (2015. 1. 1. 부 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 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 과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 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 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 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	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<u>아래 ※ 별첨 참조</u> 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③ 세액공제 (2023. 1. 1. 부 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 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 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 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 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 니다.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8. 7. 기준</u>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〈신 설〉 〈신 설〉	<u>증권대여 또는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 용 내역</u> <u>〈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래비용〉 및 〈주식의 매매회 전율〉 기재</u>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8. 7.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 에 따른 갱신	-	<u>2023. 8. 7. 기준</u>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제 24 기(2021.12.31) 제 23 기(2020.12.31)	제 25 기(2022.12.31) 제 24 기(2021.12.31)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7. 31. 기준</u>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. 수익자총회 등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: <u>제 5 영업일</u>	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: <u>5 영업일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생략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	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 년(<u>법 시행령 제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
		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생략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~ ⑦ (생략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조 제 1항 단서에	(2)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 ① (현행과 같음)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

		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생략)	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(<u>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(현행과 같음)
--	--	--	---

※ 별 첨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							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							
공제제도	<table><tr><th>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</th><th>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</th><th>세액공제율</th></tr><tr><td>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</td><td>600만원</td><td>15%</td></tr><tr><td>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</td><td>(900만원)</td><td>12%</td></tr></table>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
	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							
	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	15%							
	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(900만원)	12%							
※지방소득세 별도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								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분리과세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							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									
해지가산세	없음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									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									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									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※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600만원 (900만원)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〈삭 제〉

〈신 설〉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